

「약자동행 디자인산업 활성화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약자동행 제품·서비스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서울시 약자동행 디자인산업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2월 5일
서울특별시

1. 모집개요

- 사업명 : 2025년 약자동행 디자인산업 활성화 사업
- 사업목적 : 약자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여 서울시 디자인산업 육성, 약자의 일상생활 편의성 증진
- 모집기간 : 2025. 2. 5.(수) ~ 2. 27.(목)
- 모집대상 : 서울 소재 디자인기업 10개사

▶ 디자인기업 : 디자인전문기업, 디자인주도기업

- 디자인전문기업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근거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 소지기업
- 디자인주도기업 : 제품·서비스 경쟁력에 있어서 디자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소·중견기업(자체 디자인 전문인력 보유 필수)

* 서울 소재 판단기준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 최근 3개월 이상 서울 소재인 기업

* 사업 완료 이후 1년 이내 상품 출시 및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만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제조능력이 있는 경우 : 단독 신청
(사업자등록증 기준 제조업 여부, 생산·제조 장비 등 역량 제시 필요)
- 제조능력이 없는 경우 : 제조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후 디자인기업이 신청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4천만원(자부담 10% 별도)

- 지원금액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
- 1차 지원금 지급(60%), 중간점검 후 2차 지원금(40%) 지급

○ 지원내용 : 약자동행 디자인 제품·서비스 개발 지원

① 약자동행 디자인 제품 및 서비스 개발비(보조금) 지원

- 약자동행 신규 제품 개발, 일반 제품을 약자동행 제품으로 보완하여 개발, 기존 약자동행 제품 고도화 개발
- ※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 범위 : 디자인 기획, 디자인 개발, 설계, 시제품 제작, 디자인 출원 등

② 기업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지원

- 디자인기업 역량 진단 등을 통한 기업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약자동행 디자인이란?

- 약자(신체,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되거나 열악한 위치에 있어 정책적 배려가 요구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일상생활 편의성을 제고하고 삶의 질의 개선을 돕는 디자인

2.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5. 2. 5.(수) ~ 2. 27.(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seol@seoul.go.kr) 접수

○ 제출서류 ※ 이메일 제출 시 메일 제목 [기업명-약자동행 지원]으로 작성하여 신청서 제출

▶ 공통 서류

- ① 참가신청서(붙임1)
- ② 기업소개서(붙임2)
- ③ 사업계획서(붙임3)
- ④ 산출내역서(붙임4)
- ⑤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5)
- ⑥ 제품·서비스 등 디자인 개발 사업계획서(발표용 PPTX 또는 PDF 파일)
 - 개발(개선) 예정인 제품·서비스 등의 디자인(안) 제시
 - 제시된 디자인(안)을 바탕으로 디자인 개발의 필요성, 구체적인 개발 계획,

상품출시 및 사업화계획(양산·마케팅·판로개척), 디자인 개발역량·우수 보유기술 등
신청기업의 전문성 등 제시

※ 약 5분 정도 발표 분량, 자유형식으로 작성(최대 20페이지)

-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⑧ (법인사업자일 경우)법인 등기부등본
- ⑨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⑩ 사업장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 디자인전문기업 제출 서류

- ①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 사본
- ②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전문인력 확인서
 -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발급(<https://designfirm.kidp.or.kr/>)
-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전문인력 고용사실확인용)

▶ 디자인주도기업 제출 서류

-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② 디자인 전문인력 증빙서류 : 디자이너 경력확인서
 - 디자이너 경력관리센터에서 발급(<https://designcareer.kodfa.org/>)
-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전문인력 고용사실확인용)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서류 누락 시 심사 탈락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평가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제출문서 유효기간 확인 필수(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는 불인정)

○ 서류 내려받기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

○ 지원 제외 대상 ※ 선정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 지방보조금법 제32조 지방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가 있는 기업
- 과거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국세·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 기업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등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동일한 제품 및 서비스로 서울시 및 타 지원사업에 중복 참여 신청한 경우
 ※ '동일한 제품 및 서비스'란 동일 제품·서비스뿐만 아니라 제품·서비스 간 유사성이 인정되는 제품도 포함
- 모집공고 마감일 기준 휴·폐업 중인 기업
- 민원 야기, 임금 체불, 표절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기타 신청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심사방법

○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및 2차 발표심사

① 1차 서류심사

- 신청자격 적정 여부, 서류 누락 여부 등 검토
 (사업자등록증,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 디자이너 경력확인서, 법인 등기부등본, 4대보험 납입현황, 사업계획서, 홈페이지 등으로 사업 수행능력 여부 확인)
- 서류심사 결과 및 발표심사 일정은 이메일로 개별 통보 예정

② 2차 발표심사(※ 발표심사 일정은 2025. 3월 초 예정, 추후 공지)

- 사업계획서 발표심사(5분 발표, 5분 질의응답 예정)

○ 심사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사업계획의 타당성	- 디자인 개발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 디자인 개발 계획의 적정성과 명확성 - 디자인의 우수성 및 차별성(상품 경쟁력 등)	30
사업화 실현가능성	- 사업 완료 후 1년 이내 상품 출시 및 사업화 가능성 - 개발 제품의 활용계획(양산, 마케팅, 판로개척 등)의 구체성 - 디자인기업의 자체 수익 창출 가능성 및 성장 가능성	30
기업 우수성 및 역량	- 약자동행 관련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이력 - 기업 자체 디자인 역량보유 및 최근 국내외 어워드 수상 실적 - 기업의 사업 참여의지 및 진정성, 향후 발전 가능성	20
집행예산의 적정성	- 예산규모 대비 디자인 개발 규모 및 내용의 적정성 - 사업비 산출내역의 적정성	10
지원효과	-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수혜대상 범위 확대 및 기대효과	10

- 선정규모 : 10개 기업 내외
- 결과발표 : '25. 3월 중, 서울시 홈페이지 공지
 - 상세주소 : 서울시 홈페이지 →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
 - ※ 선정기업의 중도 포기 및 부적격 등 발생 시 예비번호순 선정 예정

4. 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기업 모집공고 (2.5. ~ 2.27.)	서울 소재 디자인기업(디자인전문·주도기업) 신청
제출서류 검토 (2월 말)	서류심사
선정·심사 (3월 초)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참여기업 사업계획 발표(5분) 및 질의응답(5분)
결과 발표 (3월 중)	-최종 선정대상 발표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협약체결 (3월 말)	-보조사업부서(서울시)와 보조사업자(기업) 간 협약 체결 -지방보조사업자 회계 교육 등 사업설명회 개최
보조금 교부 (4월 초)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1차 보조금 교부(60%)(4월 말), 2차 보조금 교부(40%)(8월 중)
디자인 개발 (4월 ~ 10월)	-디자인 개발 지원(디자인 고도화, 컨설팅, 교육, 전시 참가 등) -중간 공유회 개최(7월) -최종 평가회 개최(10월)
결과보고 및 정산 (11월 ~ 12월)	최종보고서 제출 및 보조금 정산

5. 실적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 지방보조사업자는 ① 사업을 완료하거나 ② 폐지 승인을 받은 때 ③ 회계 연도가 끝났을 때 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

○ **제출서류** ※ 실적보고서 서식은 선정기업에 추후 안내

- 지방보조금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대장, 지방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 포함) 사본 등 기타 증빙서류

6. 유의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서울특별시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해당 지방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
-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부결정 후에도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환수될 수 있음
- 1차 교부된 지방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및 디자인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현장조사 등) 그 결과에 따라 2차 지방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함
- 선정기업은 서울시, 컨설팅 전문가 및 사업 운영 전문회사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함
 - 회의, 컨설팅, 성과 공유회, 교육 프로그램, 전시 등 참여
 - 디자인 구현에 필요한 시뮬레이션, 도면, 내역서 등 작성
 - 각종 회의자료 제출·발표, 사업수행 완료 후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 등
- ① 선정 이후 주최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성과 공유회 등과 같은 프로그램에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 ② 최종 심사 시 결과물 완성도 미달 및 기한 미준수 등의 경우 지원 중단 및 지원금 회수와 향후 서울시의 지원사업 참여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부가가치세는 참여기업 부담으로 하며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음

- 선정기업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신고, 인·허가 등 절차가 필요한 경우 이를 직접 수행하여야 함
-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의 경비 배분을 변경할 경우 주관기관 승인이 필요함
- 주관기관은 사업의 진행과정과 결과물을 본 사업의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음
- 참여기업은 향후 5년간 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모니터링과 자료 요청 등에 협조하여야 함
-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등 본 사업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로 되어 있는 특허권, 저작권 및 이에 준하는 권리의 침해로 분쟁이 발생하면 책임은 선정기업에 있음

7. 문의처 : 서울시 디자인산업담당관 디자인산업지원팀(☎ 02-2133-9327)

기업 소개서

기업명							
주소 및 연락처	주소	(우 -)					
	연락처	대표전화 :			FAX :		
		신청사업담당자 전화(휴대폰) :			E-Mail :		
홈페이지							
사업자 구분	<input type="checkbox"/> 법인사업자 <input type="checkbox"/> 개인사업자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		
업종 분야	주생산 품목			설립년도			
자산현황	총 자본금		전년도 매출액		전년도 영업이익		부채
참여인력 현황 (증빙서류 제출)	연번	성명	직위	담당분야	업무내용	경력기간 (0년 0개월)	참여율 (%)
	1						
	2						
	3						
	4						
	5						
직원현황	정규직 ()명, 계약직 ()명, 기타 ()명 / 디자이너 ()명						
주요 실적 (디자인 관련 사업 수행실적, 신제품 개발 실적, 각종 디자인 공모전 및 국내외 어워드 수상실적 등)	연번	사업기간	사업내용			발주처 등 관련기관	
	1						
	2						
	3						
	4						
	5						

2025년 약자동행 디자인산업 활성화 사업계획서

기업명		
개발 제품명		
디자인 분야	제품, 서비스·경험, 시각, 공간·환경, 패션, 포장 등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의 계기가 된 배경을 구체적인 데이터 등을 통해 제시(시장 분석 등) - 사업현황 및 실태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원인을 진단하여 제시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내용 - 개발하려는 제품·서비스의 세부내용 - 디자인 개발 내용 및 범위(신규제품 개발 및 기존 제품 개선) - 타사제품 대비 우수성 및 차별성에 대한 내용 작성 - (제조기업과 컨소시엄 신청인 경우) 협력방안 및 추후 사업화 시 수익배분 계획(로열티 계약 등) 	
	※ 개발 제품 관련 이미지 자료 삽입	※ 개발 제품 관련 이미지 자료 삽입
	이미지 설명	이미지 설명
사업화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내용 - 사업 완료 후 1년 이내 상품출시 및 사업화 계획 제시 - 개발제품의 활용계획(양산, 마케팅, 판로개척 등) 제시 	

사업기간	〈예시〉 2025. 5월 ~ 10월				
추진일정	〈예시〉 - 5월 1주 : 제품 진단 및 분석 - 5월 2주 ~ 5월 4주 : 사용 환경 및 사용자 분석 - 6월 1주 ~ 6월 3주 : 디자인 기획, 아이디어 스케치 등 구체화 - 6월 4주 ~ 7월 2주 : 3d 프린팅 출력 및 검증 - 7월 3주 : 중간 공유회 발표 - 7월 4주 ~ 8월 3주 : 디자인 설계 및 도면화 - 8월 3주 ~ 9월 2주 : 목업 제작 - 9월 2주 ~ 10월 1주 : 디자인 사용성 평가 - 10월 2주 : 지재산 신청 - 11월 : 최종공유회 - 11월 : 결과보고 및 정산 - '25년 0월 : 제품 출시				
기대효과	- 사회적 기여도 :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 등 공익적 기여도, 파급효과 - 기업 역량 발전 기여도 : 사업 수행으로 기업 역량강화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성과목표 (예상 결과물)	- 본 보조사업을 통하여 예상되는 도출 결과물 등 모두 기재 (예시) 1. 사용성 및 시장성 조사, 분석자료(부) 2. 전후 비교시안 등 디자인안(2D, 3D 등) 3. 설계 도면 (부) 4. 시방서 (부) 5. 매뉴얼 복사용설명서 등 (부) 6. 목업 (개) 7. 디자인 출원 8. 결과보고서 (부)				
약자 관련 제품·서비스 개발실적	연번	제품·서비스명	대상약자	개발연도	사진
	1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길안내 어플	시각장애인	20XX	
사업비	총 천원 (보조금 : 천원, 자부담 : 천원)				

산출내역서

(단위 : 원)

비목	세목	내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지방보조금(소계)						
인건비	인건비	총괄디자이너 인건비(000)				
	인건비	고급디자이너 인건비(△△△)				
	소계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디자인 출원료				
	소계					
연구 개발비	연구용역비	목업 제작비				
	시험연구비	000 재료 구입비				
	소계					
자부담(소계)						
인건비	인건비	보조디자이너 인건비(□□□)				
	소계					
일반 운영비 (사무 관리비)	사무관리비	인쇄비				
	소계					
연구 개발비	연구용역비					
	시험연구비					
	소계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기업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약자동행 디자인산업 활성화 사업 프로그램 지원, 사후관리 등을 위해 사업참여자 정보 수집·이용
- 우수사례 발굴 및 사업성과 확산을 위한 정보 수집·이용
- 사업홍보 : 사업 안내 및 자료발송 등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이메일
- 기타 선정·지원과 관련된 개인정보

■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

2. 개인·기업 정보의 제3자 제공

■ 개인·기업 정보를 제공받는 자

- 서울시, 컨설팅 전문가, 전문회사('약자동행 디자인산업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한 회사)

■ 개인·기업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정보 이용 목적

- 효과적인 사업운영과 관리

■ 제공하는 개인·기업정보 항목

- 성명, 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소
- 기타 선정·지원과 관련된 개인정보

■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

○○○(기업명) 대표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 17조 및 제 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기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해당란에 표시)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사업자명 :

대표자 : (인)